

닭고기 의무자조금사업 왜 필요한가?



황 일 수 팀장
(사)대한양계협회
자조금 사업팀

양계자조금사업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내 대다수의 양계농가 및 계열화 업체는 동 사업의 취지와 자세한 내용까지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본다.

굳이 요약된 설명을 덧붙이자면 자조금사업이란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조금의 포괄적인 의미에는 이익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단체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법적 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조금은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목적은 단체의 공동이익과 집단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전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촉진,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 교육 등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 양계업 자조금사업은 지난 1992년 6월 1일자로 사업규정이 승인되어 대한양계협회 관리주체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992년 당시 납부된 실적(6월1일~12월31일까지)은 자체조성 86,646천원, 보조 43,300천원으로 총 129,946천원이 조성된 가운데 소비촉진홍보 및 생산자 교육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해를 거듭하면서도 예산은 소폭의 증

가 또는 보합권에 머무르는 등 열악한 환경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자조금제도 실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 우선 양계업 종사자 중 일부만이 자조금을 납입하고 효과는 업계 전체가 나눠가져야 하는 무임승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큰 문제점을 비롯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적 특성과 자조금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계농가의 참여도 저하는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업종별 생산자로 구성된 대한양계협회 및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에서는 자조금사업 법제화를 위한 청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축산자조금법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마침내 지난 2002년 4월 8일자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같은해 5월 13일자로 동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단일 품목에 대한 공동추진 진행사항을 논의하는 과정 중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하였다.

양계자조금사업 중 닭고기 자조금의 경우 법률이 제정된 이후 추진단계에 있어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바로 자조금 형태이다.

의무자조금제도 또는 임의자조금제도를 놓고 관련 단체에서는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초적인 사항이며,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최근까지 자조금사업 시행방안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자조금은 기준에 해오던 임의자조금과는 달리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으로 쓰임새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분명 이같은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자조금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특히 일부 계열화업체의 경우 자조금 납부 대상이 계열업체인지 아니면 계열화 농가인지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등으로 인한 닭고기 가격 상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어딘지를 따져보면 간단한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육계업 경기는 지난해 하절기부터 최근 까지 약 1년 이상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수시로 생산비의 절반수준 까지 폭락하는 사태를 보이는 등 그야말로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이 중 첫째는 생산파이를 꼽고 있는데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금년 들어 상당수에 걸친 육용종계 도태사업과 최근에 있었던 원종계 도태사업 등이 생산조절의 한 예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일정 보상금이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자율적으로 실시된

육용실용계 병아리 폐기처분은 단기간 내에 산지 육계값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우리는 보아 왔다. 물론 종계 및 원종계 도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자조금이 아닌 양계수급안정위원회 기금으로 지출된 것이며, 따라서 이 자금이 지속적인 수급조절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업계 종사자 전원이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인해 수혜자 또한 전 업계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소비홍보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단기간 내에 산지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닦고 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으로 기타 산업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이란 산업을 한정시켜 놓고 볼 때 소나 돼지고기 등의 소비촉진에 관한 홍보가 라디오나 TV광고로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닦고기 소비는 하락할 수 있는 부작용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홍보사업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분야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공중파 이용 소비홍보사업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에 있다.

그동안 임의자조금을 거출하여 일부 언론매체를 통한 소비홍보 광고 등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육계업 규모를 감안할 때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사

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도 만족할 만한 사업들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올해에는 거출 금액의 50% 정부 지원금이 있었으나, 이제는 100%가 지원되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필히 전개되어야 할 사업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조금으로 해야 할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한 자조금 조성에 있어 임의자조금제도로는 예산상의 문제 및 참여도 저하 등으로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대다수의 판단 아래 법률로 정하여 동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제도를 놓고 더 이상 찬반을 토론할 여유가 없다. 양돈의 경우 이미 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한 대의원 투표일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의 닦고기 자조금사업은 아직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므로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시행코자 하는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육계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복을 위한 돌파구는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으로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범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나아가 닦고기 수입업체까지도 참여하는 명실공히 닦고기 자조금사업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C